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3590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13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7 지분에 관하여 2020. 10. 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7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1. 2. 17. 접수 제36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박옥희

별지